

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-제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8. 2.

발 의 자: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일치와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치(안 제1조, 안 제5조)
- 나.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(안 제3조, 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붙임

나. 기 타

- 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지방자치법」 “제38조·제39조·제41조” 를 “제44조·제45조·제47조” 로 같은 법 시행령 “제19조의4” 를 “제54조” 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범위안” 을 “범위 안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법 “제36조제1항” 을 “제41조제1항” 으로, 법 “제125조” 를 “제134조” 로, 같은 조 제2항 중 법 “제118조” 를 “제127조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38조·제39조·제41조</u> 및 같은 법 시행령 <u>제19조의4</u>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제44조·제45조·제47조</u>----- -----<u>제54조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회기) ① (생략)</p> <p>②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.</p>	<p>제3조(회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범위 안</u>-----.</p>
<p>제5조(회기운영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<u>제36조제1항</u>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<u>제125조</u>의 규정에 의한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<u>제118조</u>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5조(회기운영) ① ----- <u>제41조제1항</u>----- -----<u>제134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<u>제127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<지방자치법>

제41조 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

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.

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 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5조 (임사회)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사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사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임사회 소집은 시·도에서는 집회일 7일 전에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7조 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7조 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134조 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지방자치법시행령>

제54조 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